

국립특수교육원 간행물의 학술지 게재에 관한 규정

제정	2006. 06. 26.	교육원규정 제105호
제1차개정	2008. 08. 14.	교육원규정 제115호
제2차개정	2009. 04. 22.	교육원규정 제118호
제3차개정	2012. 06. 14.	교육원규정 제161호
제4차개정	2019. 02. 01.	교육원규정 제255호
제5차개정	2020. 11. 19.	교육원규정 제279호
제6차개정	2025. 02. 28.	교육원규정 제348호
제7차개정	2026. 06. 15.	교육원규정 제36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수행한 사업의 결과물로 산출된 간행물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와 특수교육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술지 게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물) 간행물이라 함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행한 연구 및 사업 관련 보고서와 행사 자료집 등 ‘국립특수교육원’으로 표기된 모든 인쇄물 및 영상물을 의미한다.

제3조(게재신청 절차) ① 간행물의 내용을 학술지 등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간행물에 연구자로 기명된 공동연구자 전체가 동의한 별표1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단, 공동연구자 일부만 학술지 등에 게재할 경우 게재신청자는 별표1을 작성하고, 나머지 연구자들의 별표2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개정 2025. 2. 28.>

② 게재 신청자는 별표1의 신청서와 논문에 포함된 간행물의 내용을 국립특수교육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학술지에 게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5.>

③ 국립특수교육원의 간행물 관련 연구나 사업을 담당할 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논문에 포함된 간행물의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그 결과를 ‘특수교육연구’ 업무 담당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15.>

제4조(게재 방법) ① 삭제

② 게재 학술지에 본 연구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수행한 연구’임을 밝혀야 한다.

③ 국립특수교육원의 간행물에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행한 간행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할 때에는 저자를 ‘국립특수교육원’으로 표기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회의) 삭제

제7조(기타)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특수교육원 간행물 학술지 게재 신청서 (제3조 관련)

1. 국립특수교육원 간행물

가. 간행물명 :

나. 발행연도 :

다. 연구자 :

2. 게재 신청 학술지

가. 학술지명(제○권제○호) :

나. 발행기관 :

다. 게재월 :

라. 게재신청 논문제목:

위와 같이 국립특수교육원의 간행물을 학술지에 게재 신청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게재 시 간행물의 내용 왜곡,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구자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신청자 대표 인적사항

소속 :

전화번호:

성명 : _____ (인)

이메일 :

국립특수교육원장 귀하

■ 국립특수교육원 간행물의 학술지 게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국립특수교육원 연구보고서 학술지 게재 동의서 (제3조 관련)

본인은 ○○○○년도 「연구 보고서 제목」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바, 기 연구보고서를 ○○○,○○○,○○○ 연구자 ○인의 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구자 _____ (인)

국립특수교육원장 귀하